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4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노종면
임오경 · 이정문 · 최혁진
이재정 · 이주희 · 강득구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현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이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및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예술지원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술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및 예술인조합을 결성·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

지).

라.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예술인의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제척·신분보장·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신분보장·제척·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구성·분쟁조정·합의권고·조정중지·직권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무처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게 하며, 사무처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위원회의 구제조치

·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이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및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2.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예술단체”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9.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0.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를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바.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사. 제57조를 위반한 행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③ 예술인은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① 예술인은 국민의 문화적, 예술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④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활동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지원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사업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⑦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검열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작성된 명단을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배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제22조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11조(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인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권리 보장 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인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과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3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술인조합 결성 및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

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서면 계약 체결 의무)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계약서의 보존) 예술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제18조(성평등한 예술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제19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0조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인 권리보장 기구 등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제22조(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제7조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및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5.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6. 제49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8. 제5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9.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10.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11.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사업자의 영업시간 내에 예술사업자의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분과위원회

2.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

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4항의 부문별 위원회의 구성·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34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결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무처의 사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업무 지원
2. 제39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제33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분쟁조정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무처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3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4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분쟁의 조정) ① 예술인권리침해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조정위원회에 직권

으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42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45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술인권리침해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예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43조(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의 절차 및 진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등

제4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등)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는 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보 절차, 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사무처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제보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무처로 하여금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사무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위원회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4.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이 법에 따른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예술단체,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피신고인이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여 온 경우
8. 신고인이 신고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9.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사무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시정권고) ① 위원회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예술인·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예술인·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1호라목·바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5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5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5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양수인등은 종전의 예술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57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거나 제49조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49조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재처분 등의 제척기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예술 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1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7년으로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위원장으로 호선된 사람은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